

《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방법 》

□ 목적

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.

□ 노인학대 유형

-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,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

유형	정의
신체적 학대	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언어·정서적 학대	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성적 학대	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,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재정적 학대	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
방임	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자기방임	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
유기	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

□ 노인학대의 원인

빈번한 학대를 유발시키는 노인관련 요인,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 관련요인,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 요인, 가정환경 요인,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- 개인적 특성 : 노인의 성격적 특성, 정신장애, 알코올중독, 무기력감 등
- 노인의 의존성 : 노인의 장애, 질병, 치매 등
-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: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, 정서장애, 알코올중독, 약물중독 등
-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: 부양자의 신체적, 정신적 스트레스, 부양미숙, 부양능력의 결여
- 가정 환경적 요인 : 가정의 경제적 문제, 가족관계의 불화, 재산문제, 힘의 갈등 등
- 세대 간의 학대의 전이 :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함
- 사회문화적 요인 : 사회의 노인차별, 가치관의 변화,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

□ 노인 학대예방 10대 수칙

- ① 어떠한 경우에도 노인을 학대 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.
- ②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.
- ③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.
- ④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.
- ⑤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.
- ⑥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받기보다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.
- ⑦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.
- ⑧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.
- ⑨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- ⑩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.

□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:

☎1577-1389(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) 또는 110

☞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.

☞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①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

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

③ 노인복지상담원,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

□ 처벌규정(노인복지법 제7장,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형법 적용 가능)

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

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·성희롱 등의 행위,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,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,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

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

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, 실종노인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

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④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: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

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, 업무 방해한 자 :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
⑥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자: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끝.